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1056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홍경원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원

담당변호사 이정원

변론 종결2024. 10. 30.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가 2020. 2. 11.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6. D 주식회사로부터, 2018. 1. 11.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19. F 주식회사로부터 각 위 회사들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마쳤다. 2024. 1. 24. 기준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합계 43,614,679원이다.

나. C의 조모 G가 2019. 3. 18. 사망하여 피고와 H, C이 망 G를 대습상속하였다.(법정상속분 피고 3/7, H, C 각 2/7)

다. 피고와 H, C은 2020. 2. 1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2020.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판단기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이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망 G의 대습상속인으로서 2/7 지분의 법정상속분을 보유하는 C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G가 1975. 9.경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온 12평 가량의 주택과 30평 가량의 주택 부지인 사실, 피고는 1981. 11. 1. I와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인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고, I가 사망한 2003. 3. 23. 이후 소득활동을 하면서 망인이 사망한 2019. 3. 18.까지 망인을 부양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약 8,000여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가사 및 소득활동으로 망인을 부양한 기간이 약 38년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였으며, I가 사망한 2003년경부터는 피고의 수입이 가족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부양기간 및 정도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H은 기여분 합의의 의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여기에 반드시 기여분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관한 위 인정사실과 같은 정도의 피고의 기여가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C의 분할협의에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기여분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김진희

별지